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01호 2022. 10. 7.(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시행)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다. ‘별표1’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별표1) 자치행정국장 → 회계업무담당국장

세무1·2과 → 지방세업무

기획예산실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재무과 → 회계업무담당과장

라. 지출 절차 세부사항 변경 (안 제7조)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8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58,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시행)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다. ‘별표1’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별표1) 자치행정국장 → 회계업무담당국장

세무1·2과 → 지방세업무

기획예산실장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재무과 → 회계업무담당과장

라. 지출 절차 세부사항 변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해당없음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집행”을 “2억원 이하의 집행”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로, “처리 할”을 “처리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수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 세외수입업무 주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서무업무담당	-	각 과·지소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품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②·③ (생략)</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규칙 제22조 제3항</u>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p>	<p><u>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2억원 이하의 집행-----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u>훈령 제12조 제3항</u>----- -----.</p>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7조(지출의 절차) ① -----

-----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처리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략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